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8. 11 선고 2023가단319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변론 종결2023. 7. 14.

판결 선고2023.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망 D와 피고가 2021.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망 D에게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77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11.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23. 2. 7. 현재 미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합계 35,644,459원(= 원금 34,333,211원 + 수수료 63,381원 + 이자 1,247,867원)이다.

나. 망인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던 중인 2021. 5. 13.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21. 5. 24.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경남 남해군 E 토지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5. 13. 아들인 딸인 F에게 위 토지를 증여하고 2021.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22. 5. 9. 사망하였고, 피고는 2022. 11. 22.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호증의 1,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과 위 E 토지를 피고와 F에게 모두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망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피고의 상속재산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시킬 소의 이익도 있다[따라서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상속채무금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단118834)에서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7,652,741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이효제

별지